

95.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12. 5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청
- 다. 회부일자 : 1995. 12. 8
- 라. 상정일자 : 195. 12. 13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매입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
-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음

95. 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48
의결 년월일	95.12.20 (제4차)

제출일 : 95. 12. 5
제출자 : 부천시장

회계명 : 일반회계

199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m²,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	비 고
	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38 3	288,366.2 2,200	29,841,311 1,589,472	3	8,924.6	6,077,394	41 3	297,290.8 2,200	35,918,705 1,589,472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34 2	286,185.2 1,804	28,197,064 1,247,862	3	8,924.6	6,077,394	37 2	295,109.8 1,804	34,274,458 1,247,862	
	2. 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4	2,181	1,664,247				4	2,181	1,644,247	
	3. 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	396	341,610				1	396	341,610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3 2	1,686.7 268.63	1,526,813 59,232				3 2	1,686.7 268.63	1,526,813 59,232	
	4. 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 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 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3 2	1,686.7 268.63	1,526,813 59,232				3 2	1,686.7 268.63	1,526,813 59,232	
사 용 및 대부허가		토지 건물 기타	1	6,079.4					1	6,079.4		

95.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

의안번호

제출년월일 : 95.11.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1. 주 문

☐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(안)

2. 제안사유

☐ 증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

○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증부경찰서부지 교환용지로 받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으로 사용코자 함.

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

○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무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및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인근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의 4필지 7,317㎡(2,212평)을 매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코자 함(주차대수 200대).

3. 주요내용

☐ 증부경찰서 교환 용지 매입

○ 매입재산 현황

(단위 : ㎡,천원)

지 번	지목	면 적	금 액	비 고
계		1,607.6	1,153,325	예산확보액 : 1,153,325 원종2동사회복지관 건립예정
소사구 송내동 382-1	대	671.5	637,925	
오정구 오정동 139-1	대	936.1	515,400	

※ 도시계획용도 : 준공업지구, 일반주거용지지구

□ 차량등록사업소부지 매입

○ 매입재산 현황

(단위 : m²,천원)

지 번	지 목	지 적	금 액	비 고
계		7,317	4,924,069	공시지가
원미구 도당동 133	잡종지	1,557.9	769,602	예산확보액 663,600
" 133-1	잡종지	2,348.5	1,784,860	
" 132	대	448.4	228,684	
" 132-1	대	393.4	188,635	
" 132-2	잡종지	2,568.8	1,952,288	

※ 도시계획용도 : 일반주거 풍치지구

4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 35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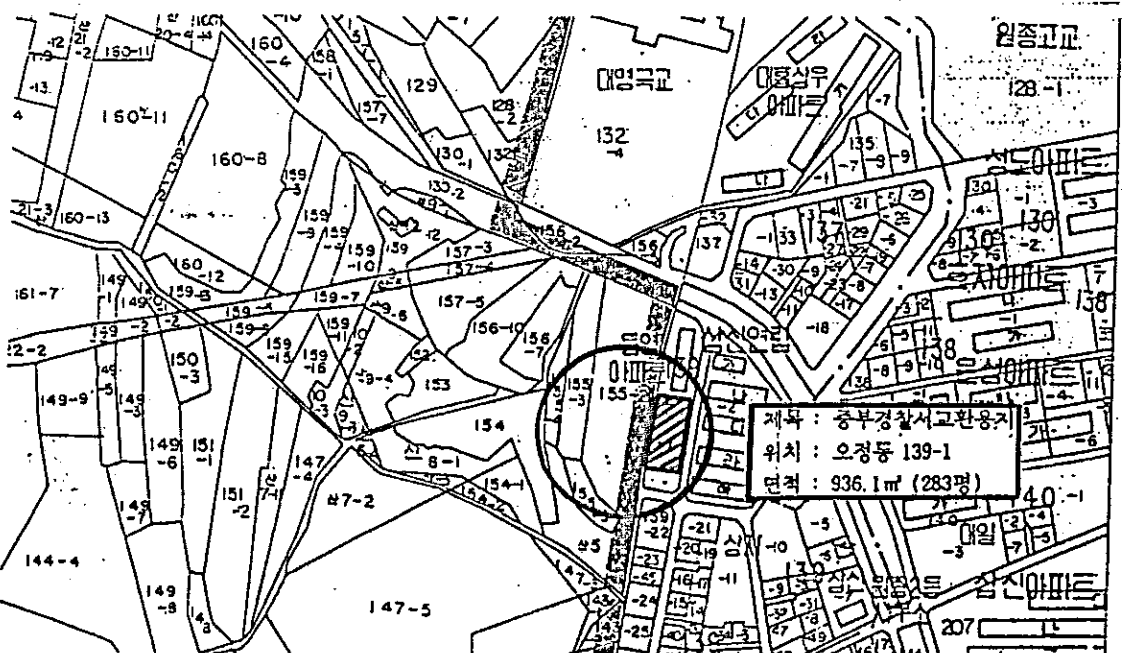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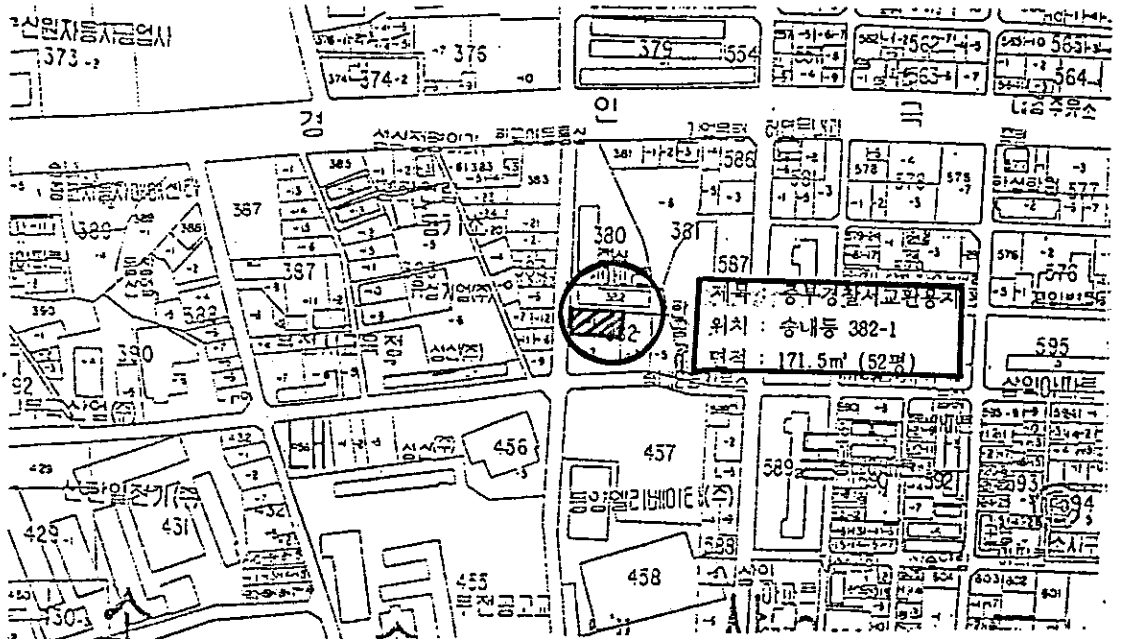
나. 지방재정법 제 77 조

다. 지방재정법 제 78 조

라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 조

마.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 조

□ 위치도



□ 위치도

